

전과 시행지침

13차 개정 2026. 02. 27.

1. 전과 신청 자격

가. 전과는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 총 이수 학기가 6학기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25.11.03.)

나. 전과할 경우 전과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 학과(전공)의 학과장(주임교수), 학장 및 전입학과(전공)의 학과장(주임교수),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 외국인 유학생은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타학과(부)에서 외국인 전담 학과(부)로 전과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예외로 한다.(호 신설 2024.11.27.)(개정 2025.03.26.)(개정 2026.02.27)

2. 대상학과 및 인원

가. 전입 가능 학과(개정 2025.11.03.)

- 1) 미래인재대학
- 2) 경상대학
- 3) 생명환경대학
- 4) 공과대학
- 5) 보건의료대학
- 6) 예술체육대학

나. 인원 : 학부(군) 또는 학과(전공)의 교수회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전입 제한 학과(개정 2025.11.03.)

- 1) 한의과대학
- 2) 간호학과
- 3) 물리치료학과
- 4) 임상병리학과
- 5) 작업치료학과
- 6) 유아교육학과

라. 성인학습자는 성인학습자 재학생이 있는 학과내에서만 전과 허용(개정 2025.11.03.)

3. 전형방법

- 가. 신청자가 많아 인원을 제한할 경우에는 취득학점에 의한 성적순으로 선발
- 나. 동점자 처리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의 연소자순으로 선발

4. 폐과,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전과 시행

- 가. 타 학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는 재적생 전과시행계획에 의한다.
- 나. 야간학과가 폐과(모집단위 중지)된 경우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과를 허가하되 동일 주간학과와 타 야간학과로 제한한다. 단, 동일 주간학과가 없거나 폐과된 경우에는 타 주간학과로 전과를 허가한다.
- 다. 모집단위 폐지에 의한 폐과,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전과는 부칙에 의한다.

5. 교육과정 및 학점인정

- 가. 전과한 학생은 소속 해당 학년의 학생이 입학당시부터 적용받았던 교육과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년도의 학생이 이수하는 교육과정으로 적용 할 수 있다. 단, 폐과로 인한 전과 시 본인의 입학당시부터 적용받았던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나.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중 전입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교양과목 제외)과 동일하거나 대체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제출된 학점인정표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호 신설 2026.02.27)

다. 나항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교과목 중,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계열기초(공통 포함), 전공필수(선택 포함)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호 신설 2026.02.27)

6. 전과취소

- 가. 전과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과취소원[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출학과(전공의 학과장(주임교수), 학장 및 전입학과(전공)의 학과장(주임교수),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후 대학의 학과장 및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나. 전과 취소는 전과 허가 후 당해 학기 시작 전 할 수 있다.

7. 유의사항

전과를 허가한 학기에는 **성적**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4. 다의 사유에 따른 전과의 경우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6.02.27)

부칙

이 지침은 2014년 0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이 지침은 2018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FTA 국제학부 및 체육학부 합기도학전공의 전과는 학칙의 부칙(기획예산부-85, 2018.02.12.)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학칙시행세칙 63조(전과) ②항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전과 허가인원은 전공(학과)별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공(학과)별로 제한 할 수 있다.
 3. 2학기에 전과를 할 경우 직전학기에 최저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③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전과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그 밖의 사항은 전과시행지침에 따른다.

부칙

- ① 이 지침은 2018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예술체육대학으로의 전과는 2019학년도 재적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이 지침은 2018년 0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FTA 국제학부 및 체육학부 합기도학전공의 전과는 학칙의 부칙(기획예산부-85, 2018.02.12.)에 의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학칙시행세칙 63조(전과) ②항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전과 허가인원은 전공(학과)별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공(학과)별로 제한 할 수 있다.
- ③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전과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그 밖의 사항은 전과시행지침에 따른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0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지침은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이 지침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인문사회과학대학 법부동산학부 부동산학전공, 행정학부 전자정부학전공, 경상대학 관광학부 관광개발학전공, 이공과대학 생활과학산업학과와 전과는 학칙의 부칙(기획예산부-72, 2017.03.02.)에 의하고, 인문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야), 경상대학 호텔관광경영학전공(야)의 전과는 학칙의 부칙(기획예산팀-593, 2019.12.02.)에 의하되 다음 각호를 적용한다.
1. 학칙시행세칙 63조(전과) ②항 적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전과 허가인원은 전공(학과)별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전공(학과)별로 제한 할 수 있다.
- ③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전과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그 밖의 사항은 전과시행지침에 따른다.

부칙

- ① 이 지침은 2022년 0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글로벌문화융합대학 한국어문화학과, 영어학과, 중국문화산업학과, 패션뷰티학부 뷰티디자인전공, 패션뷰티학부 뷰티화장품전공, 미래인재대학 공공행정학과, 국가안보학부 국제관계학전공, 경상대학 글로벌경영학과(야), 경영경제데이터산업학부 금융경제데이터분석전공, 경영경제데이터산업학부 IT경영데이터분석전공, 비즈니스융합학부 무역·물류전공, 비즈니스융합학부 기업회계전공, 관광경영학과,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융합관광기획학과, 생명환경융합대학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생명과학과, 스마트팜학과, 산림조경학부 산림과학전공, 산림조경학부 환경조경학전공, 디지털융합공과대학 건설시스템공학과, 지구환경공학과, 반도체·에너지공학과,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인공지능전공,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정보통신소프트웨어전공, 인공지능융합공학부 스마트자동차전공, 전자·보안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전자·보안공학부 사이버보안공학전공, 예술체육대학 생활조형디자인학과, 보건의료과학대학 디지털헬스케어학과와 전과는 기획예산팀-314호(2022. 5. 26.) 개정 학칙(시행세칙)에 의한다.
- ③ 기타 특별한 사유에 따른 전과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④ 그 밖의 사항은 전과시행지침에 따른다.

부칙(학사지원팀-162, 2024.01.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조 다항은 202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학사지원팀-4314, 2024.11.27.)

이 지침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지원팀-1489, 2025.03.26.)

이 지침은 2025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지원팀-4240, 2025.11.03.)

이 지침은 2025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사지원팀-834, 2026.0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2026학년도 1학기 전과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전 과 신 청 서

1. 인적사항 및 희망 전과 학과(전공)				
소 속	학부	전공(학과) (주,야)	학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자 택)	
희망 전과 학과 (전공)	학부	전공(학과) (주,야)	휴 대 폰	
해당자만 표기	(복수전공 · 부전공 · 교직) : (이수자 · 신청자)		확 인 : (인) <small>(확인란 학사지원팀 담당자가 작성함)</small>	
2. 기 취득학점				
구 분	계			비 고
취 득 학 점	학년	총 취득학점 ()		
평 점 평 균	학년	총 평점평균 ()		
3. 동의 확인				
전 출 학 과 (전 공)		전 입 학 과 (전 공)		
학과장(전공주임교수)	학 장	학과장(전공주임교수)	학 장	
<p>본인은 위와 같이 전과를 희망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 청 인 : (인)</p> <p style="text-align: right;">보 호 자 : (인)</p> <p>상지대학교 총장 귀하</p>				
* 유의사항				
- 전과를 허락한 당해 학기에는 <u>성적</u>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학칙시행세칙 제67조)				
- <u>전출학과에서 이수한 학점 중 전입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교양과목 제외)과 동일하거나 대체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여 제출된 학점인정표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u>				
- <u>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학점인정표에 따라 인정받지 못한 계열기초(공통 포함) 및 전공 필수(선택 포함)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u>				
* 글로벌리더학부 외국인 유학생 :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u>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61점 이상</u>)의 성적 제출				
* 첨부서류 : 서약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학적부 사본 1부, 끝.				

【별지 제2호 서식】

전 과 취 소 원

단과대학		학부(군)		학과(전공)		학번	
성명		생년월일				학년	
주소					연락처 () -		
					휴대폰		
전과 취소 사유							
동의 확인							
전 출 前 학 과 (전 공)				전 입 後 학 과 (전 공)			
학 과 장		학 장		학 과 장		학 장	
위와 같이 전과를 취소하고자 전과취소원을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본인 성명 :		(인)	
				보호자 성명 :		(인)	
상지대학교 총장 귀하							
접수년월일		년 월 일		담당자 확인			